



“안전한 교통문화 오늘도 실천합니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수 신 각 조합원

(경 유)

제 목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연료구매카드 발급 안내 재 알림

1. 경전버조 제1314호(2026. 07. 02)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시행에 앞서, 추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 조합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료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시·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발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급 절차 등을 재차 안내하오니, 아직까지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께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개시 후 카드 미발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소급적용 불가) 즉시 해당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금번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는 국회 및 정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어렵게 마련한 제도로써, 일부 차량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될 경우 정부가 제도 운영을 재검토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보조금 수급에 적극 동참(특히 지입 등 불법운행 차량 결제를 위한 개별 법인계좌 개설문의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카드업체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3개 카드업체 한정)

○ 신청방법 : 카드업체에 전세버스 경유 연료구매카드 발급 신청

○ 신청안내 : 카드사별 자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붙임 1, 2, 3] 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조합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 신청 시 유가보조금 포털시스템(www.uga.go.kr)과 버스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buscard.co.kr)에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관리 필수 시스템)

- 붙임 : 1)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및 연료구매카드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KB국민카드 가입신청서 및 담당자 명단 등 관련자료 1부.(홈페이지 게재)
3) 신한카드 버스유가보조금카드 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재) “끝”

자세한 공문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어플(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사 장 안 영 식 (직 인 생 략)

경영지원부 운영과 대리 김현창

부장 이현숙

전무 유동광

협 조 자

시 행 경전버조 제 1414 호 시행일자(2026. 07. 14)

우 16293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90. 3층 <http://v2.kgtb.or.kr>

전화 (031)291-8700 전송 (031)291-5133 E-mail : kgtb8700@daum.net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및 연료구매카드 신청방법 안내

☒ 유가보조금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에 의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및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금전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구체적인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의 종류

① 유류세연동보조금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② 유가연동보조금(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해야만 지원 가능한 보조금)

-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 구매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보조금의 지급기간(정부 정책에 따라 갱신 또는 종료)

①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결과에 따른)유가연동보조금(개정 진행 중)

-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원위기경보 발령에 따른)유가연동보조금(개정 진행 중)

- 2026년 9월 30일까지

②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은 노선버스의 지급기간을 따르되, 노선버스의 지급기한이 2027년 7월 16일 이후로 연장될 경우 2027년 7월 15일까지만 지급함.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또는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이 1,500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할 수 있음.(개정 진행 중)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
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문구로써,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1년만 지
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요건(경유 평균판매 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이거나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이 충족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 거쳐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계산식

① 유류세연동보조금

▶ 노선버스 적용 금액의 70% 적용(개정 진행 중)

$$\text{현재 유류세} - \frac{\text{2001년 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text{유류세(183.21원/ℓ)}} + \frac{\text{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text{유류세(183.21원/ℓ)}} \times 70\%$$

② (비상경제본부 회의 결과에 따른)유가연동보조금

▶ 노선버스 적용 금액의 70% 적용(개정 진행 중)

$$\frac{\text{지역별 평균판매가격(원/ℓ)}}{\text{기준가격 (1,700원/ℓ)}} \times 70\% \times 70\%$$

※ 다만, 보조금액은 최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함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상 ‘유류세’의 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함.

☞ 유류세 부과금액(2026년 07월 기준, 오피넷)

정유사, 정유소 이윤	유류세 및 부가세 외 차액
유류세에 대한 부가세	유류세 전체의 10%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정의한 ‘유류세’ 총 396.21원	주행세 : 73.06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 : 42.15원/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교통·에너지·환경세 : 281.00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계산 예시 및 예상금액

① 유류세연동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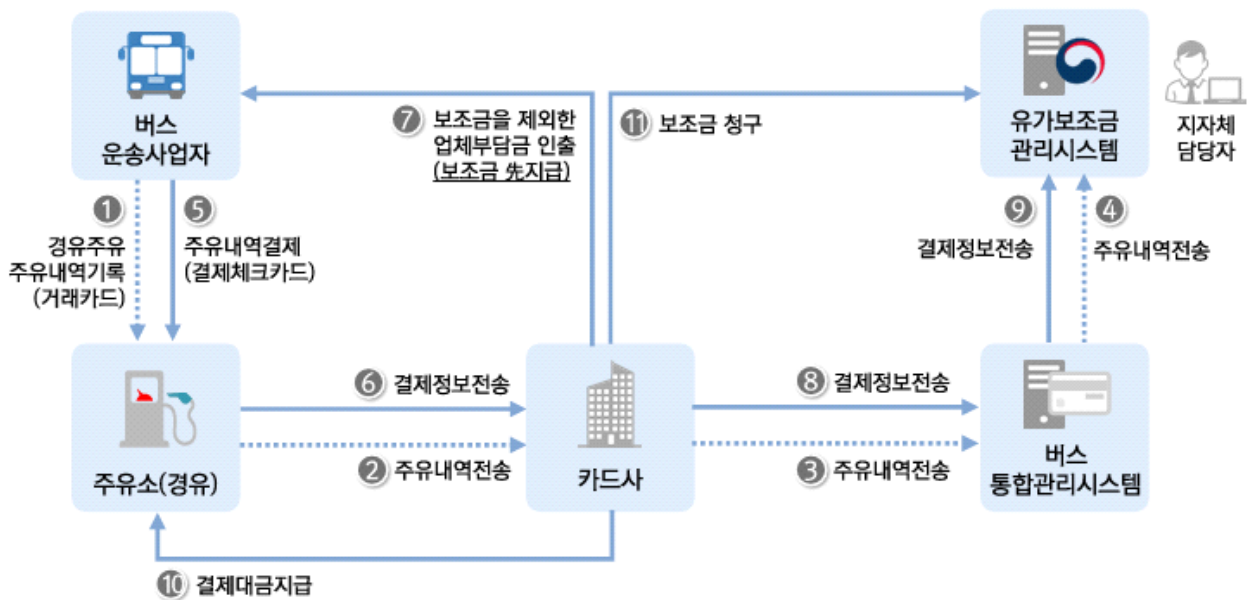
$$\begin{array}{rclclcl} \text{현재 유류세} & & 2001\text{년 } 6\text{월} & & \text{유류세 인상분} & & \\ 396.21\text{원} & - & \text{당시 유류세} & + & \text{부가세} & \times 70\% & = 164.01\text{원(예상)} \\ & & 183.21\text{원} & & 21.3\text{원} & & \end{array}$$

② (비상경제본부회의 결과에 따른)유가연동보조금

$$\begin{array}{rclclcl} \text{지역별 평균} & & & & & & \\ \text{판매가격} & - & \text{기준가격} & \times & 70\% & \times & 70\% & = 78.07\text{원(예상)} \\ 1,859.33\text{원} & & \text{ℓ당 } 1,700\text{원} & & 111.53\text{원} & & \text{(전세버스)} \\ \text{(경기도)} & & & & & & \end{array}$$

① + ② 합계 = 리터당 242.08원(예상 금액이므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 개념도



※ 주유 직후 결제 시점에 카드사가 보조금을 제외한 업체부담 금액만을 자동 청구함.

☒ 유가보조금 지급 연료구매카드 발급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단, 자가주유는 차량별 RFID카드를 이용)
- 현재 연료구매카드를 취급하는 신용카드업자로는 KB국민, 우리, 신한카드가 있음.

- 카드발급 신청과 함께 ❶ 유가보조금포털시스템(www.uga.go.kr)
- ❷ 버스유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buscard.co.kr)가입

※ 유가보조금 지급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므로 두 곳 모두 반드시 가입

《KB카드》

1. 신청방법 : 「KB국민 스타버스 유가보조카드」 발급 전담 직원과 상담, 신청
2. 카드발급문의 : [\[붙임 2\]\(홈페이지 게재\)에 포함된 전담 영업부 연락처 참조](#)
3. 필요서류

순 번	서 류	내 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4	대표자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업카드 담당자
5	주주명부(신규 가입 시)	
6	차량등록증 사본	
7	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신용카드 신청 시)	재무제표는 최근 3기

《우리카드》

1.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우리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 신청
2. 카드발급문의 : 1588-9955
3. 필요서류

순 번	서 류	내 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명세	

※ 업체별로 추가 징구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지정주유만 가능

1. 신청방법 : 우편 접수만 가능(아래 필요서류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A동 18층

법인사업2부 유가보조금 담당자(우편번호 04551)

2. 카드발급문의 : 1566-7189

3. 필요서류

순 번	서 류	내 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일 3개월 이내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법인카드 관리자 신분증 사본	법인카드 관리자 지정시
6	통장사본	신한은행 통장만 가능
7	주주명부	
8	차량등록증 사본	

4. 신청서류

[\[붙임 3\]\(홈페이지 게재\) 신한카드 버스유가보조금카드 신청서](#) 인쇄, 작성

① 페이지 : 법인정보, 사업장정보, 결제정보 기재

② 페이지 : 법인인감 날인

③ 페이지 : 발급대상 유종, 차종, 결제/카드/대체 여부 체크 + 법인인감 날인

④ 페이지 : 동의함 체크

⑤ 페이지 : 동의함 체크 + 법인인감 날인

⑥ 페이지 : 동의함 체크

⑦ 페이지 : 동의함 체크 + 대표자 서명

⑧ 페이지(법인카드 관리자 지정 시) : 법인 및 법인카드 관리자 정보 기재 + 법인카드 관리자 서명 + 법인인감 날인

⑨ 페이지 : 주주명부상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 작성자 서명

⑩ 페이지 : 작성자 서명

※ 필수 기재사항 외 기타 사항은 필요시 기재

《《공통사항》》

✦ 발급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

- ① 신용카드의 경우 회사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도 상이할 수 있음
- ② 체크카드는 조건없이 발급 가능
- ③ 차량 대수별로 발급 가능(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

✦ 결제방식 : 신용카드는 카드 결제일에 일괄 결제

체크카드는 주유 현장에서 즉시 결제

- ① 신용카드는 카드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큼 대금이 일괄적으로 결제되는 방식
- ② 체크카드는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현장에서 즉시 출금되는 방식(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 가능)

✦ 주유형태에 따른 카드선택

① 지정 주유(거래 주유소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 가능 개수는 카드사와 상의)

- 1) 카드 신청 전 해당 주유소와 미리 계약체결(보조금 적용 목적임을 설명)
 - 카드 신청 시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번호 제출
 - 2) 카드사에 지정주유를 신청하면 ‘주유카드’와 ‘결제카드’ 2가지 형태의 카드 발급
 - 주유카드는 일명 ‘외상카드’로, 차량별로 발급받아 주유 시마다 사용(외상 기록용)
 - 결제카드는 체크카드이며, 주유소와 협의된 날짜에 외상으로 주유했던 대금을 결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 신한카드는 현재 지정주유만 가능함(비지정주유 확대 검토 중)

② 비지정 주유(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국 주유소에서 주유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전국 주유소 이용 가능(단, 이중 발급은 불가)
-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법인·대표자 신용 평가를 거치며, 신용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발급되지 않을 때는 법인명의 정기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설정 가능

③ 지정·비지정 혼합

- KB·신한·우리 3사 카드를 지정·비지정으로 혼합하여 사용 가능
- 단, 차량 1대당 반드시 1개 카드만 발급 가능(예시 참조)하며, 동일 차량 추가발급 시 기존 카드는 중지됨

예) 10대의 보유차량 중 1호 ~ 5호 차량은 지정주유,(신한/우리/국민 체크카드 가능)

6호 ~ 10호 차량은 비지정주유로 설정 가능(우리/국민 신용 또는 체크카드 가능)

※ 카드사별로 발급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카드사에 문의

④ 자가 주유(차고지 등에 자체 주유시설을 갖춘 경우)

- 유류 구매 단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주유기에 설치된 POS와 차량별로 지급된 RFID카드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기록 · 전송하는 구조
- [트라이언소프트 류형준 본부장\(전화 070-7464-1320 / 010-8973-6361\)](#)과 상담 후 ‘자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설치 일정 조율
- 설치비는 무료이며, A/S도 기한 없이 지원됨
- 외부 주유를 위한 신용 · 체크카드도 추가 발급 가능

☒ 연료구매카드 사용 시 금지행위

① 카드사로부터 연료구매카드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행위

-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음

②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③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할관청의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

- ▶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는 행위.
- ▶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는 행위
- ▶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는 행위
- ▶ 실제 주유 · 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 가담하는 행위
- ▶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 14 규정은 천연가스, 수소연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 방법 및 절차)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2항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운수종사자는 주유 후 거래카드 또는 RFID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를 위반한 경우